

「군포도시공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내규」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



2024년 2월 13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89 호

## 군포도시공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조(구성) 제4조 제2항 중 “경영시설본부장”을 “경영기획실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경영지원부장”을 “혁신기획팀장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강 승 구
	직 위 성 명	재 무 회 계 팀 장 최 중 환
	담당자 성명 (전 화)	이 영 윤 ( 3 9 0 - 7 6 1 9 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4조(구성)</b>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<u>경영시설본부장</u>으로 한다.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은 <u>경영지원부장</u>과 해당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·계약·건축·토목·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사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<b>제4조(구성)</b> ① ----- ----- --.</p> <p>② ----- <u>경영기획실장</u>으로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혁신기획팀장</u>으로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